p.341

[변경 전]

31.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체결하면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그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고,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전에는 특허권의 독점적・배타적 효력에 따라 제3자의 특허발명 실시가 금지된다.

[변경 후]

31.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체결하면 특허권자는 제3자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그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고,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전에는 특허권의 독점적・배타적 효력에 따라 제3자의 특허발명 실시가 금지된다.

p.587

[변경 전]

[해설]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, 국제조사보고서 송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또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국제사무국에 청구범위 보정을 신청할 수 있다. (PCT 19)

[변경 후]

[해설]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, 국제조사보고서 송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또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국제사무국에 청구범위 보정을 신청할 수 있다. (PCT 19) 또한, 이 경우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보정할 수 있다.